2022년도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5. 24.(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권헌영(분과위원장), 김민아, 홍지만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9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30건(안건번호 제2022-44102호~4553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44102호는 ■■■ 블로그에 영상의 불법복제물 및 캡처화면을 순차적으로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불법복제물 외에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나 보호해야 할 표현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44103호~44110호는 ■■■ 카페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72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9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2.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워♧♧♧♧♧♧♧♧♧♧♧♧',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77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410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게시된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82프레임이면 영상으로는 몇 초 분량에 불과함.

- 오진해 전문위원: 연속된 영상을 82프레임으로 캡처한 것이 아니라, 줄거리 별로 전부 캡처를 하고 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자막을 함께 게재한 것을 보면 일종의 “몰아보기”와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E 위원: 이러한 경우에도 시정권고를 한 사례가 있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전체 영상 중 연속되는 82프레임 정도라면 시정권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그러나 심의 대상 게시물과 같이 영상저작물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정도의 캡처 게시물은 시장대체성이 있다고 보아 가결해오고 있음.,

- A 위원: E 위원님의 지적도 중요한 부분임. 완전히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임. 다만 이 경우는 우리 규제의 내용을 알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여겨짐. 캡쳐화면을 이어붙이면 결과적으로는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4410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410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4103호~4411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및 카페에 영상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4103호~44110호는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4111호~45531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천개의 바람이 되어 (가수: 임태경)'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4189호 (음악)천개의 바람이 되어 (가수: 임태경)'는 2020. 12. 6. 발매한 국내 음원으로 다음 카페에서 제공중임.

('[중점](출판)남편이 미모를 숨김 (출판:연담,카카오페이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4267호 '[중점](출판)남편이 미모를 숨김 (출판:연담,카카오페이지)'은 2019. 6. 16. ~ 2020. 9. 4. 연재한 웹소설로 웹하드에서 30포인트에 판매 중임.

('[중점](영화)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4842호 '[중점](영화)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2022)'은 2022. 4. 13.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3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 3건을 포함한 2,720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오진해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2-44189호의 경우 권리자 민원과 연관이 있는 사안임. 권리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카페의 대표 주소 및 권리자의 대표 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주소를 기재하여 전체 삭제를 요청하였는데, OSP는 특정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삭제 처리하고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보호원도 시정권고의 대상을 게시물 URL 단위로 하고 있어 대표 주소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지만, 해당 권리자의 민원 내용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인지하고 직접 조사하여 시정권고 심의를 요청하였음.

- E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 통제를 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의 입장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 A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지나치게 많은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근본 법리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명백히 불법복제물이 존재하고 의무를 논할 여지가 있는 경우까지 해당 판례만을 근거로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고 여겨짐.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2-44111호~4553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4111호~4553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2-44102호, 제2022-44103호~44110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44111호~4553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5. 31.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홍지만